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4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강대식 • 박준태 • 이인선

유용원 · 김장겸 · 김선교

박정하・배준영・안철수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하지만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함.

따라서 현행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 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 려가 높음.

특히 지방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나 특정 국가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사례가 매우 적은 점을 고려

하면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선거에서의 외국인 선거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아울러 그간 외국인 선거권자에게 부여되었던 선거운동도 이와연동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1호단서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거권자(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선거권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	제4조(인구의 기준)
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	
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	
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후단 삭제>
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	
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15조(선거권) ① (생 략)	제15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②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u><삭 제></u>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37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 저 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 시(구가 설치 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 군 (이하 "구·시·군"이라 한다) 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 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 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 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 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 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 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 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 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 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

∥37조(명부작성) ①
<u>선거권자(제218조</u>
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
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
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
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u>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u>

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 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 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 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 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 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시·군의 장 등에 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⑧ (생 략)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저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

② ~ ⑥ (현행과 같음)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
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번호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u>사</u> 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 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 ·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한다.

② ~ ⑧ (생 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 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u>\}</u>
람은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러하지 아니하다.

-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9. (생 략)
- ② (생 략)

1. ------<단서 삭제>

2.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